#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71

발의연월일: 2021. 1. 19.

발 의 자: 허은아 · 이태규 · 성일종

배현진 · 김기현 · 추경호

김성원 · 정운천 · 이종성

권명호 • 양금희 • 권영세

강민국 · 김영식 · 전주혜

김 웅・조태용(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에서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함)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맹견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고 있을 경우 거친 움직임으로 인하여 탈착될 수 있고, 맹견의 소유자가 임의로 탈착하여 맹견을 방치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큼.

또한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동물보호소 등에서 등록대 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 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동물보호소 등에서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이력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맹견으로 인한 다른 반려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도 맹견에 대하여 입마개를 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제13조의2제1항제4호, 제15조의2, 제21조제1항 후단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목걸이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 장치를 장착한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맹견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것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동물보호소의 설치 신고 등) ① 비영리 목적으로 제14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구조·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동물보호소"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공고, 동물의 반환 등, 보호비용의 부담, 동물의 소유권 취득 및 동물의 분양·기증에 관하여는 각각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 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와 시·군·구"는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본다.

제2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동물은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여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의4부터 제2호의7까지를 각각 제2호의5부터 제2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2항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4.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 유자등
- 5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호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보호소 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5 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
	나 동물의 목걸이 등에 부착
	(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
	<u>치를 말한다.</u>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
	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
	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맹견에 대하여는 내장
	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
	<u>착하여야 한다.</u>
<u>④</u>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	<u><u>5</u></u>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	

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생략)

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② ~ ④ (생 략) <신 설>

<u>제4항까지의</u>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

  - 1. 2. (현행과 같음)
  - 2의2.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 장치를 할 것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5조의2(동물보호소의 설치 신 고 등) ① 비영리 목적으로 제 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동물을 구조・보호하기 위 한 시설(이하 "동물보호소"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 는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공고, 동물의 반환 등, 보호비 용의 부담, 동물의 소유권 취득 및 동물의 분양ㆍ기증에 관하 여는 각각 제17조, 제18조, 제1 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및 "시・ 도와 시・군・구"는 "동물보호 소를 설치 · 운영하는 자"로 본 다. -----. 이 경우 등록대상동물은 내장형 무선전 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여 등 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② • ③ (생 략)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7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3. (생 략) <신 설>

<u>2의4.</u> ~ <u>2의7.</u> (생 략)

3. ~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신 설>

5의2. (생략) 6. ~ 15. (생략) ③ • ④ (생 략)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2 를 위반하여 반려동물과 동 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 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 2의8. (현행 제2호의4 부터 제2호의7까지와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물

보호소를 설치 · 운영한 자

5의3.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6. ~ 1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